

자산보관 위탁계약서

주식회사 코람코가치투자양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자” 라고 한다)와 수협은행(이하 “수탁자” 라고 한다)은 위탁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보관업무(이하 “자산보관” 이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산보관위탁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전 문

가. 위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에서 정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 중이다.

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필요한 영업인가 취득을 전제로 위탁자는 수탁자를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산보관업무를 담당할 자산보관기관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자산보관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적 및 적용)

본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자산보관 업무 및 자산보관 업무에 한정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달리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투법 및 관련 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1. “관련법령”이라 함은 부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등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규율하는 법규를 말한다.
2. “위탁자산”은 위탁자의 자본금과 차입금의 합계액 또는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권리, 현금, 기타 재산, 부동산(지상권, 전세권 등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러한 부동산의 처분 등에 따라 수탁자가 수취하는 현금으로서 위탁자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일반사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부투법 제22조의2 제 1 항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자산관리회사”이라 함은 위탁자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자산의 투자 및 운용과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5. “판매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판매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6. “관련 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위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회사를 말한다.
7. “자산보관계좌”라 함은 수탁자가 위탁자가 취득한 증권을 보관하기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위탁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8. “위탁계좌”라 함은 수탁자가 위탁자가 취득한 현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위탁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9. “담보신탁계약(서)”이라 함은 제 35 조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의미한다.
10. “결산기”라 함은 위탁자의 정관에 의한 결산기(사업연도)를 말한다.

제 2 절 자산보관기관의 업무범위

제 3 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수탁자는 위탁자 및/또는 자산관리회사(이하 총칭하여 “위탁자 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부동산의 보관

- 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존 및 관리
- 나. 위탁자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제 4 조에서 정의됨)의 처분에 관한 계약체결 및 등기명의를 제 3 자에게 경료하는 업무
- 다. 위탁자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의 기재사항 변경(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업무
- 라.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보관, 처분, 공매 등 수탁자로서의 제반 업무
- 마.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로서 본 계약

이 정하는 업무

2. 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수취하는 현금의 보관 및 관리

가. 위탁자산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수탁자가 수취하는 현금의 수령 및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정산

나.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부동산의 처분대가 기타 담보신탁 계약이 정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으로서 수탁자가 수취하는 현금의 보관, 지급, 배분 관련 업무

다.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3. 증권의 보관 및 관리

가. 증권의 인수, 인도 및 보관, 예탁대상 증권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며, 자체 보관하는 경우 내화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증권상 인정되는 원리금 수령, 유무상 청약 등 제반권리의 행사

다.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4. 현금의 보관 및 관리

가.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현금의 수령, 지급 및 보관

나.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지급

다.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관련 수탁기관에 대한 보수,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

라.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계좌개설, 폐지 및 변경업무

마.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요청시 현금(대출금 포함)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바.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5. 해산(청산)관련 업무

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에 따른 위탁자산의 보관업무 및 처분 관련 실무 사무

나. 위 가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제3절 부동산의 보관방법

제 4 조 (부동산의 신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위탁자는 그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할 경우, 본건 부동산을 수탁자인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보관을 위탁하기로 한다.

제 5 조 (신탁의 목적)

제 4 조에 따른 본건 부동산의 신탁은 수탁자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명의를 보존 및 관리하고, 등기명의를 제 3 자에게 경료하는 업무, 담보 신탁계약에 따라 본건 부동산을 보관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수익자)

- ① 제 4 조에 따른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한다.
- ③ 위탁자가 제 3 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후, 수익자를 교체,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

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른다.

제 7 조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수탁자가 본 계약의 효력발생 후 “위탁자 등”의 운용지시를 받아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수탁자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지체 없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책임)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건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기로 한다. 이 때, 위탁자가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위탁자의 자산관리회사에 의하여 수행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 3 자와 계약(예컨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기간 중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신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 등의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제한하는 사업인정에 관한 통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이나 통지를 받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수탁자는 본건 부동산 또는 본 계약상 부동산 보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 3 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상 부동산 보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과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담보 신탁계약에 따른다.

⑥ 수탁자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통지는 담보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통지로 갈음 한다.

제 9 조 (신탁원본)

① 신탁의 원본은 본건 부동산과 본건 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멸실, 훼손이 있는 경우 또는 본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금전 등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③ 제 1, 2 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른다.

제 10 조 (신탁수익)

신탁의 수익은 본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처분으로 인한 매각대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담보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른다.

제 11 조 (신탁원본 및 수익의 보관 및 관리방법)

수탁자는 수탁자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각 호의 현금을 수령하여 위탁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담보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른다.

1. 위탁자산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수탁자가 수취하는 현금
2.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부동산의 처분대가 기타 담보신탁계약이 정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으로서 수탁자가 수취하는 현금
3. 기타 1, 2 호에 준하여 수탁자가 취득하는 모든 현금

제 12 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위탁자가 본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제 3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신탁의 일부종료)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 3 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제 4 조에 따른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4 조 (신탁수익의 교부)

- ① 수탁자는 본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처분으로 인한 매각(처분)대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탁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지체 없이 제 16 조 소정의 위탁자 명의의 위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신탁수익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제 13 조에 의한 신탁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처분된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탁수익에 관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절 증권 및 현금의 보관방법

제 15 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방법)

- ①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의 자산보관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받아 위 자산보관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제 3 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취득하게 될 증권

2. 기타 위탁자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모든 증권

- ② 수탁자는 보관을 위탁받은 수표·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배서 등) 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현금은 위탁자 명의의 위탁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자산관리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또는 대리하여) 제 3 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처분하게 될 증권을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또는 대리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상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한다.
- 1. 수탁자는 증권상 인정되는 이자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등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현금은 위탁자 명의의 위탁계좌에 보관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위탁자 명의의 자산보관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수탁자는 투자주식의 발행회사로부터 유무상증자 등으로 인한 권리부여 통지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그 통지시에 지정한 날까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권리상실에 대하여 수탁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3. 수탁자는 투자주식의 발행회사로부터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있는 경우 그 일시, 장소 및 의안의 요령을 위탁자의 일반사무수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다.

제 16 조 (현금의 보관 및 관리방법)

- ①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각 호의 현금을 자산관리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령하여 위탁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설립 유상증자시에 출자된 현금
2. 자산관리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제 3 자와 체결한 계약(예컨대 위탁자의 자산(부동산, 증권)을 처분하는 계약, 임대차계약, 자금차입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가 취득하게 될 현금
3. 수탁자가 위탁받은 증권상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현금(예컨대 이자, 배당금 등)
4. 기타 위탁자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모든 현금

-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현금을 자산관리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가 그 소관 업무에 의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인출하여 제 3 자 또는 관련 수탁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제 3 자와 체결한 계약(예컨대 위탁자의 자산(부동산, 증권)을 취득하는 계약, 임대차계약, 자금차입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현금
2. 수탁자가 본건 부동산을 신탁받음에 따라 행정기관, 관할법원(또는 등기소) 및 과세권자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현금(제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3. 위탁자가 수탁자 및 관련 수탁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수수료 및 비용

4.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영업외 비용(제세공과금 등)

5. 기타 위탁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현금

제 5 절 권한과 의무

제 17 조 (자산 보관 및 관리상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부투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산보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수탁자의 고유자산 및 제 3 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자산을 인수, 인도, 수령 또는 지급함에 있어 그 지시받은 내역과 실제 거래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발견한 경우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 그 추가지시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수탁자는 매월 위탁자의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을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와 내역의 서류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내역서 등을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보관자산(부동산, 증권, 현금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보유 자산별 잔액명세서를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정기통지 이외에도 일반사무수탁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자

산보관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 (권한)

- ①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 ②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증서를 일반사무수탁회사와 협의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투자자산의 인수, 보유 및 등록 등을 위하여 예탁 또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조 (회계장부, 관련서류의 비치 및 공시)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의한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장부 등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위탁자의 청산시 및 관계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자산관리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수탁자에 대하여 자산보관과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법령이 정하는 위탁자와 관련된 서류(이하 “관련서류”)를 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고, 위탁자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관련 수탁회사와의 협조의무)

- ① 수탁자는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위탁자의 관련 수탁회사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탁자의 관련 수탁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보관과 관련된 관련법령상 보고, 통지 및 공고의 무준수를 위한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지행위 등)

- ① 수탁자(수탁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을 수탁자의 고유자산과 혼용하거나 수탁자 또는 위탁자 이외의 제 3 자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산보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및/또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동 정보 또는 자료를 자산보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기타 관련법령상의 금지 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 ② 수탁자는 제 3 자와 위탁자와의 사이에 이해 충돌이 야기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외관상 그러한 이해 충돌이 직간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담보신탁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6 절 보수 및 비용부담

제 22 조 (보수)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자산보관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본건 부동산의 취득 전에 해산하는 경우 보수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부동산 보관업무 관련 보수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업무 관련 보수는 연간 삼천만원(VAT 별도)로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업무 관련 보수에 대해 위탁자는 매 결산기마다 일천오백만원(VAT 별도)을 매 결산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당해 결산기말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최초 결산기, 최종 결산기 및 본계약이 제29조에 따라 중도 해지된 경우 등) 당해 결산기 보수는 실제 업무 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최초 지급하는 보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④ 위탁자와 수탁자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담보신탁 관련 보수는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제 23 조 (비용 부담)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자산보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신탁에 따른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으로 부담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제 7 절 보증 및 책임

제 24 조 (진술 및 보증)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부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요건(자본금, 발기인,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기관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요건(신탁업법의 인가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의 임직원이 부동산담보신탁 등 자산보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여 수탁자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위 1 호의 절차와 기준은 부투법 및 관련법령의 해당규정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제 25 조 (책임과 면책)

- ① 수탁자가 자산보관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 정관 또는 본 계약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며, 기타 국가부도·긴급조치·전쟁·천재지변·관련 수탁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② 수탁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이외에 자산보관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탁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탁자는 본 계약 종료 전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수탁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제 8 절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 해지 등

제 26 조 (계약의 효력발생일)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제 22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7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자의 청산등기일 또는 제 29 조에서 정한 중도 해지시까지로 한다.

제 28 조 (계약의 변경)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제 27 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 제 6 조에 따라 수익자의 신규 지정, 교체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 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본건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수탁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별지 1] 의 신탁부동산의 변경으로 같음한다. 다만,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본건 부동산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다른 계약조건은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한다.

제 29 조 (계약의 해지)

- 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위탁자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자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의 자산이 모두 처분되어 위탁자가 청산되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 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14 일 이상의 기간(이하 “시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따라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위탁자에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새로운 자산보관회사의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 ③ 수탁자에게 인가취소, 지급불능, 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 자

산보관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④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주주총회 등의 의결로서 계약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사를 접수한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 계약의 해지의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30 조 (계약종료시의 조치)

- ① 본 계약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른다.
1. 계약종료 시점의 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 상태 그대로 위탁자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시점의 위탁자의 증권 및 현금을 위탁자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체없이 인도 및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종료시점의 최종계약서와 자산보관 상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미 통보한 사항은 위탁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자산보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위탁자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 또는 위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자의 새로운 자산보관기관이 위탁자의 자산보관 업무를 즉시 인계할 수 있도록 위탁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제반조치(자산보관 상황의 설명, 업무이관 관련 인력확보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수탁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부투법상 자산보관기관으로서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 등과 함께 해당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제 9 절 기 타

제 31 조 (양도 및 재위탁)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자산보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의 사유, 범위 및 조건 등의 관련자료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비밀유지)

수탁자(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위탁자의 사전승인 또는 관련법령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자산보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위탁자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3 조 (지시 및 통보방식)

①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상대방 및 관련 수탁회사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하는 지시서 또는 통보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승인권자의 서명 혹은 인감에 의한 지시서 또는 통보서
2. 암호체계 또는 다른 절차 등에 의하여 진위가 검증된 서신
3. 우편(등기 또는 항공) 또는 전보
4. 텔렉스
5. 팩스전문
6. 전자서명이 포함된 이메일(E-mail)
7.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전송
8. 기타 전자전송

②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지시 또는 통보의 경우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당해 회사의 법인인감에 갈음하여 별도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및 관련 수탁회사에게 그 용도를 명시한 인감신고서를 미리 통보 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의 변경시에도 동일하다.

- ③ 제 1 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지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대방 또는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접수 또는 도달시점을 그 효력 발생시점으로 본다.

제 33 조 (관계법령의 준용)

계약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34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5 조 (특약사항)

- ① 부투법 시행령 제 37 조 제 2 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위탁자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처분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해당 담보신탁계약서를 본 계약의 [별지 3]으로 첨부하기로 하며, 이 경우 담보신탁계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계약과 담보신탁서가 상

호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이 우선한다.

- ② 본 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제3절 부동산의 보관방법 등 부동산 관련 계약의 내용은 수탁자가 위탁자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위탁자가 타 금융기관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자산보관계약 또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36 조 (본 계약의 우선)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본 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자산보관위탁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효력을 상실하며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서류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제2026년 9월 7 일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아이콘삼성)

회 사 명 : (주)코람코가치투자양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자 : (주)코람코자산신탁



“수탁자”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회 사 명 : 수협은행

대 표 자 : 은행장 신 학 기

위 대리인 신탁사업본부장 최 수 광 (인)



[별지 1] 본건 부동산의 내역

※ 본건 부동산의 내역은 추후 위탁자와 수탁자간 체결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상 신탁 부동산의 표시상 부동산으로한다.



[별지 2] 부동산 관리책임 주체 및 범위

위탁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의 관리책임 주체 및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위탁자

- ①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 추심 등 임대차 관리행위
- ② 시설관리, 청소, 방역, 경비, 수선, 화재보험 가입 등 보존행위
- ③ 수익금의 운용, 관리행위
- ④ 신탁된 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 ⑤ 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민원, 소송에 대한 처리
- ⑥ 기타 수탁자의 관리를 제외한 일체의 관리행위

2. 수탁자

- ①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존 및 관리
- ②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부동산 보관, 처분 등 업무
- ③ 위탁자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체결 및 등기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업무
- ④ 기타 자산보관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별지 3]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는 추후 위탁자와 수탁자간 체결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로 한다.

(이면 첨부)